

야간근무지침



우 리 요 양 원

야간 근무지침

● 야간근무의 이유

야간근무자가 매일 수급자의 상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,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킨다.

● 야간근무지침

1. **[목적]**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. **[적용]**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.
 - 1) 야간근무자는 기관의 종사자로 야간시간대(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)에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.
 - 2)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.
3. **[근무준비]** 야간근무자는 매일 18시00분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 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.
 - 1) 입소현황,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(와상환자,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)
 - 2)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
 - 3)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(소방관서, 의료기관) 확인
 - 4)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: 마스터키(출입구 번호) 등
4. **[준비확인]** 야간근무자의 안전 준비사항(상시 복용약, 비상약 등)을 확인한다.
 - 1) 준 비 자 : 시설장(또는 간호조무사)
 - 2) 확 인 자 : 야간근무자
 - 3) 비 상 시 : 야간근무자는 비상시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유선으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.

5. **[야간근무]** 야간근무자는 안전점검 내용을 숙지하며,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야간점검을 3회(22:00~24:00와 00:00~06:00)이상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.
- 1) 야간점검시 일시 및 특이사항은 전산시스템(야간점검일지)에 기록한다.
 - 2) 야간근무자는 수급자를 확인하고 시설안전 점검, 전기·소방시설 및 기타사항을 점검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한다.
 - 3) 확인자는 야간근무일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조치를 취한다.

구분	안전점검 내용
수급자 확인	수급자 상태 (응급상황 등), 침대난간 안전상태, 배회어르신 수면상태, 침구류는 잘 덮고 주무시는지 확인
시설안전 점검	출입구 잠금장치, 주방잠금장치, 창문개폐, 소화기구 및 비상구, 유도등 등
전기·소방시설	소화기구 정위치, 소화시설관리 여부 및 작동상태 식당 가스누출상태 및 전기콘센트 안전상태
기타사항	비상연락망, 대피경로, 마스터 키 등 실내조명 상태(취침등 및 소등) 및 온도, 습도 상태 제한구역 출입통제 상태

6. **[초동대처]** 야간점검 또는 신고 접수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,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7. **[야간근무점검]** 불시에 야간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.
8. **[휴게시간]**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한다.
9. **[야간근무 기록]** 야간 근무시 “야간근무일지” (전산시스템)에 업무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
10. **[기록지 확인]** 필요시 야간근무기록에 따른 사항을 CCTV 녹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11. **[신의·성실 의무]** 야간 근무자는 신의·성실에 입각하여 근무에 충실하여야 한다.